

의안번호	2201588
의 피 인	여기구의원
회 답 일	2024. 7. 18.
추 계 번호	24B18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9,200만원, 2029년 2억 2,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억 7,800만원(연평균 5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나무의사의 교육(안 제21조의13제4항 신설) - 보수교육기관 경비지원	59	3	43	54	—	159	31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안 제21조의15 신설)	133	1,394	747	324	221	2,819	564
추가재정소요	192	1,397	790	377	221	2,978	595

자료: 산림청 및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13제4항 신설(나무의사의 교육)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21조의15 신설(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함)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보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의13제4항 신설 (나무의사의 교육)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경비 지원
2	안 제21조의15 신설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비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나무의사의 교육—보수교육기관 경비 지원(안 제21조의13제4항 신설)

(1) 개요

- 현행법은 나무의사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교육대상)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²⁾
 -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효율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2) [참고자료 1] 나무의사 제도 및 [참고자료 2]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및 지정현황 참고

- 자격시험: 1차시험 필기, 2차시험 서술형 필기 및 실기
- 교육시간: 3년간 20시간 이상³⁾
- 경비: 교육 받는 자가 부담
- 보수교육기관: (사)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함)⁴⁾
 - 2024년의 경우, 보수교육 23회 168시간, 920명 규모로 교육 예정⁵⁾
 - * 협회 17회 120시간, 협약기관(수목진단센터) 6회 48시간
 - ※ [참고자료 3] 한국나무의사협회 참고

□ 개정안은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는 보수교육 수수료(수입)와 보수교육비용(강사료, 대관료, 실습자재 등 지출)의 차액, 즉 수지차만큼 산림청장이 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추가재정소요 = 보수교육비용(지출) - 보수교육 수수료(수입)
 - 다만, 산림청은 개정안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해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수입: 보수교육 수수료 추계

□ 연도별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신규, 누적) 및 협회 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누적)는 1,383명
 - 산림청은 2024년 누적 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약 1,683명 규모로 전망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1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제2항에 따라 (사)한국나무의사협회를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및 공고 (산림청 공고 제2022-117호,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공고, 2022. 3. 24.)

5) 협회는 나무의사 자격 취득 후 나무병원 입사한지 3년이 경과되기 전의 회원을 우선 선발하고 그다음 순서로 교육대상자 선발할 계획임

[표 2]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 및 나무의사협회 회원 현황: 2019~2024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도별 시험실시 횟수 ¹⁾		2회	1회	2회	2회	2회	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	신규(A)	52	237	250	367	477	300 ²⁾
	누적(B)	52	289	539	906	1,383	1,683 ²⁾
나무의사협회 회원수 (C, 누적인원)		—	177	454	749	1,176	1,514
회원가입률(D=C/B, %)		—	61.2%	84.2%	82.7%	85.0%	90.0%

주: 1) 2차시험(실기 및 서술형 필기) 기준

2) 2024년 합격자 수는 예상치

1.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허가('20.11.13.)

2. 나무의사 수는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으로 자격증 발급현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림청은 2033년까지 약 2,600명 이상의 나무의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며, 2024년부터 시험횟수를 연 1회로 조정
- 따라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약 102명의 신규 합격자 수가 발생하여 2033년에는 2,6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연도별 나무의사 합격자 수 실적 및 전망: 2019~2033년
(단위: 명)

	연도	연도별 나무의사 합격자 수		시험횟수
		신규	누적	
실적	2019	52	52	2회
	2020	237	289	1회
	2021	250	539	연도별 2회
	2022	367	906	
	2023	477	1,383	
전망	2024	300	1,683	연도별 1회
	2025	102	1,785	
	2026	102	1,887	
	2027	102	1,989	
	2028	102	2,091	
	2029	102	2,193	
	2030	102	2,295	
	2031	102	2,397	
	2032	102	2,499	
	2033	102	2,601	

주: 과거 나무의사 합격자 수 및 산림청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의 보수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수수료 단가, 협회 회원가입률은 다음과 같이 가정

- (교육대상자) 나무의사 자격시험 소지자(합격자)
- (교육주기)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 후 3년마다 수강
 - 현행법은 3년간 2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⁶⁾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개정안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
 - 예를 들어, 2019년 합격자는 2022년, 2025년, 2028년 등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정
- (교육수수료 단가) 20시간 기준 비회원 30만원, 정회원 21만원(30% 감면)⁷⁾
 - 협회가 보수교육대상자로부터 거두는 교육수수료 단가 준용(2024년 기준)
 - 이때 동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협회 회원가입률) 추계기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협회 회원 가입률은 90.0%로 가정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2024년 기준, 협회 회원 수는 1,514명이고, 나무의사 합격자 수 전망치(누적)은 1,683명으로 회원가입률 90.0% 수준으로 추정

□ 추계 결과,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수수료 수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보수교육 수수료(수입)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교육대상자 수(A, 명)		419	714	550	521	816	—
(자격시험 합격연도)		('19, '22)	('20, '23)	('21, '24)	('19, '22, '25)	('20, '23, '26)	—
	정회원(B=A×90%)	376	642	494	468	734	—
	비회원(C=A-B)	43	72	56	53	82	—
수수료 단가 (만원/명)	정회원(D=E×70%)	21	21	21	21	21	—
	비회원(E)	30	30	30	30	30	—
수입 (백만원)	정회원(F=B×D)	79	135	104	98	154	570
	비회원(G=C×E)	13	22	17	16	25	92
	수입 합계(H=F+G)	92	156	121	114	179	662

주: 1.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가정
 2. 20시간 기준 비회원 30만원, 정회원 21만원(30% 감면): 2024년 기준 협회가 보수교육대상자로부터 거두는 교육수수료 단가 준용(동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협회 회원가입률은 90%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산림청 및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9(보수교육의 기간·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 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7) (사)한국나무의사협회, 「2024년도 나무의사 보수 교육 운영계획」, 2024.1.23.

(3) 지출: 보수교육비용 추계

□ 산림청 및 협회에 따르면 나무의사 보수교육 운영비용은 2024년 기준 약 1억 5,180만원 규모

- 교육과정 운영비용 8,638만원, 교수요원 인건비 6,480만원
 - 현행 법령은 보수교육기관은 강의실, 전임교수 및 운영 전담인력,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⁸⁾

[표 5] 나무의사 보수교육 운영비용 소요예산: 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1. 교육과정 운영	소계	86,380	
	• 강사료	22,080	120천원×23회×8시간
	• 교재원고료	27,600	4천원×150p×2과목×23회
	• 교재유인비	18,400	20천원(칼라)×40부×23회
	• 임차료	16,000	
	- 교육장비	8,000	100천원×10회×8시간
	- 차량(버스)	5,000	500천원×10회
	- 교육실	3,000	500천원×6회
	• 교육소모품비	2,300	100천원×23회
2. 교수요원 인건비	소계	64,800	
	• 전임교수	36,000	3,000천원×1명×12개월
	• 운영요원	28,800	2,400천원×1명×12개월
총계		151,180	

자료: 산림청 및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출자료

-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는 임차료, 원고료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추계기간 동안 2024년 규모로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2024년 기준 8,638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 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 (교수인원 인건비) 전임교수(1명) 및 운영요원(1인)은 보수교육기관의 필수 인원이므로 추계기간 동안 2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2024년 기준 6,48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추계 결과,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 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보수교육비용(지출)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대상자 수(A, 명)	419	714	550	521	816	—
	교육과정 운영단가(B, 천원/명)	96	98	100	102	104	—
	소계(C=A×B, 백만원)	40	70	55	53	85	304
교수요원 인건비(D, 백만원)		67	69	71	74	76	357
합계(E=C+D, 백만원)		107	139	126	127	161	661

주: 추계기간 동안 교육과정 운영비용 및 교수요원 인건비에 각각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자료: 산림청 및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출자료

(4) 추계결과

□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안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지출) 보수교육비용(A)	151	159	164	168	172	818
	(수입) 교육수수료(B)	92	156	121	114	179	662
추가재정소요(C=A-B)		59	3	43	54	— ¹⁾	159

주: 1) 2029년은 보수교육 수수료 수입이 교육경비 지출보다 많은 해임

1,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보수교육 주기: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실시

자료: 산림청 및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안 제21조의15 신설)

□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청 제출자료를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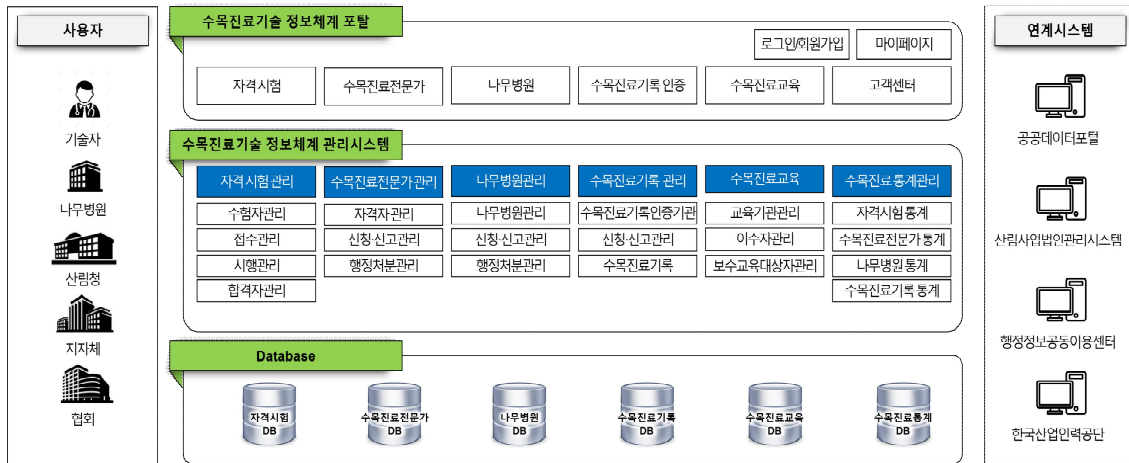
- 산림청은 수목진료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수목진료기술 정보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용역」(2022.11. 완료)를 수행함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함

[표 8]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성(안)

구성 항목	주요 내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수목진료분야 정보체계 청사진 설계를 위한 환경 및 현황분석, 목표모델/이행계획 세부계획 작성
클라우드 기반의 수목진료정보체계 IT인프라 구축	• 수목진료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서버전산
수목진료전문가 경력·교육 관리체계 구축	• (경력관리)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수목치료기술자의 예방·치료 경력을 관리하여 이직, 시험응시 등 필요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교육관리) 나무의사 보수교육 대상자, 유예자 및 이수자·미이수자 관리, 교육 신청 등 보수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 개발
나무병원 실적 등 관리체계 구축	•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사업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관리하여 입찰참여 등 필요 시 실적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수목진료 기록관리 체계 구축	• 나무병원의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관리 • 진단·처방한 나무의사 또는 수목진료 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수목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업무공통 포털서비스	• 수목진료전문가, 나무병원 등 전문가 및 업체의 자격증, 경력, 교육이수 신청·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통합관리자시스템	• 정보체계 사용자, 콘텐츠 등 관리와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를 위한 수목진료정보 관련 지리정보서비스 및 타시스템 연계정보 서비스 등 제공
통합통계서비스	• 수목진료전문가, 나무병원, 수목진료기록, 자격시험 등 수목진료 정보에 대한 업무 맞춤형 통합통계정보 제공
수목진료정보체계 유지관리	• (전산운영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위탁 유지관리 • (상용SW 및 수목진료정보체계)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연단위 유지관리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그림 1] 수목진료기술 정보체계 구성(안)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추계 결과,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8억 1,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단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수목진료정보체계 ISP(A)		133	—	—	—	—	133
IT인프라 도입(B)		—	637	—	—	—	637
	HW 및 운영 SW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	—	260	—	—	—	260
	SW 상용 솔루션(직접구매/일괄발주)	—	377	—	—	—	377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C)		—	757	747	104	—	1,608
	업무공통 포털서비스	—	190	194	—	—	384
	통합관리자시스템	—	171	171	—	—	341
	수목진료전문가 경력·교육관리체계	—	397	—	—	—	397
	나무병원실적 관리체계	—	—	146	—	—	146
	수목진료기록 관리체계	—	—	236	—	—	236
	통합통계서비스	—	—	—	104	—	104
수목진료정보체계 유지관리(D)		—	—	—	220	221	441
	상용SW 유지관리	—	—	—	66	68	134
	수목진료정보체계 유지관리	—	—	—	154	154	307
추가재정소요(F=A+B+C+D)		133	1,394	747	324	221	2,819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다. 추계 결과

- 추계 결과, 산림청장이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9,200만원, 2029년 2억 2,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억 7,800만원(연평균 5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나무의사의 교육 (안 제21조의13 제4항 신설) - 보수교육기관 경비 지원	지출: 보수교육비용(A)	151	159	164	168	172	818	164
	수입: 교육수수료(B)	92	156	121	114	179	662	132
	소계 (C=A-B)	59	3	43	54	—	159	31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안 제21 조의15 신설)	수목진료정보체계 ISP(D)	133	—	—	—	—	133	27
	IT인프라 도입(E)	—	637	—	—	—	637	127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F)	—	757	747	104	—	1,608	322
	수목진료정보체계 유지관리(G)	—	—	—	220	221	441	88
	소계 (H=D+E+F+G)	133	1,394	747	324	221	2,819	564
추가재정소요 (I=C+H)		192	1,397	790	377	221	2,978	595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일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제출자료)

□ 나무의사란?

-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 산재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주요 내용

-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를 수행
-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의 예방·치료를 수행

구분	응 시 자 격	교육이수(의무)	시 험
나무의사	① 석/박사, ② 학사+1년 실무, ③ 특성화고+3년 실무, ④ 기술사, 기사 등 자격자, ⑤ 기능사+3년 실무, ⑥ 수목치료기술자+4년 실무, ⑦ 5년 실무	▶ 양성교육기관 150시간 이상	▶ 나무의사 시 험
수목치료 기술자	별도 응시자격 없음	▶ 양성교육기관 190시간 이상	▶ 수목치료 기술자 시험 (양성기관별)

- (나무병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개원한 나무병원만이 생활권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무병원 등록 요건(기술인력)

구분	'20.6.28.(12.31.) 이전		'20.6.28.(12.31.) 이후		'23.6.28. 이후
1종 나무병원	· 나무의사 1명	⇒	· 나무의사 2명 또는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	· 나무의사 2명 또는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2종 나무병원	· 수목치료기술자 1명 또는 조경경력자 1명	⇒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폐지

□ 나무병원 등록 현황

	(2024. 6월 기준, 개소)	
	2023	2024.6월
1종 나무병원	771	865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 배출 현황

	(2024. 6월 기준,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합계
합계	1,083	1,079	1,436	1,216	1,428	490	6,732
- 나무의사	52	237	250	367	477	— (9.13. 합격자발표)	1,383
- 수목치료기술자	1,031	842	1,186	849	951	490	5,349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15개 기관)

지역	기관명	지역	기관명
서울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전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사)한국수목보호협회	광주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서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신구대학교 식물원	부산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강원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구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충북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경북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남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년 나무의사 제도 관련 예산: 총 1,251백만원

-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 1,094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인건비 등 운영비 157백만원
- 2024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제도 관련 예산: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산림병해충방제 (2335-300)	일반병해충방제 -나무의사 자격시 험 운영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시험 운영, 자격자 관리시 스템 기능개선· 유지관리 등	—	—	1,251 (나무의사 자격시험 1,094백만원, 운영비 157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932-300)	생활권 수목진료 -나무의사 자격시 험 등		1,249 (나무의사 자격시험 1,094백만원, 운영비 155백만원)	1,250 (나무의사 자격시험 1,094백만원, 운영비 156백만원)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및 지정현황

(산림청 제출자료)

□ 운영목적

- 생활권 수목진료의 발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 등 수목진료체계 구축

□ 운영계획

- 국립나무병원 설치·운영
 - 국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국립나무병원을 설치·운영
 - 국립나무병원의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으로 하고, 나무병원장은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이 겸직
- 공립나무병원 설치·운영
 - 각 시·도에서는 수목진료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산림 관련 전문연구기관, 수목원, 사업소 등에 공립나무병원 설치·운영
 - 공립나무병원장은 산림관련 연구기관의 장, 수목원장, 사업소장 등이 겸직
- 수목진단센터 지정·운영(9개 대학)
 -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보급, 수목진료업무 관계자 교육, 생활권 수목진료 관련 각종 기술자료 발간을 위하여 대학에 수목진단센터를 지정·운영
 - 센터장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 구분)에 따른 교수가 겸직
- 업무내용
 - 민원발생 병해충 진단 및 분석, 방제관계자·수목관리자 교육
 - 수목진료 실태조사
 -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수목진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등록시험 연구(국립공립나무병원)
 - 생활권 산림병해충 실연연구과제 수행(수목진단센터)

□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공립나무병원	1,200	1,200	1,200	—
－ 국비	600	600	600	—
－ 지방비	600	600	600	—
수목진단센터(국비)	720	720	720	—

□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지정 현황

○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명 칭	소 재 지
국립나무병원	국립산림과학원(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7)
부산시 공립나무병원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부산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6)
대구시 공립나무병원	대구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대구 달서구 화암로342)
대전시 공립나무병원	한밭수목원(대전 서구 둔산대로169)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오산사무실(경기 오산시 청학로211)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강원 춘천시 화목원길24)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51)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세종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전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전북 진안군 덕현로45-54)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7)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경북 경주시 통일로367)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386)
제주도 공립나무병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산연구부(제주시 수목원길 72)

○ 수목진단센터(9개소)

명 칭	소 재 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서울 관악구 관악로1)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대전 유성구 대학로99)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병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7)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전남 순천시 중앙로255)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경북 상주시 경상대로2559)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01)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참고자료 3]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청 제출자료)

□ 협회 개요

- 법 인 명: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2, 3층)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1에 따라 설립
- 대 표 자: 회장 김판석
- 조 직: 사무처(1), 연구소(1), 위원회(6), 지회(9)
- 인 원: 총 23명(이사 18, 감사 2, 연구소 1, 사무처 2)
- 회원현황: 1,228명('24. 6. 31. 기준)
→ 회원이력, 교육이수현황 등은 협회 홈페이지 및 엑셀프로그램을 통한 자체 관리중
- 설립목적
 - 나무의사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수목 진료 기술의 발전
 - 수목보호 및 수목복지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과 국가발전에 기여

□ 주요업무

- 수목복지 및 수목진료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수목 진료 정책, 연구·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 나무의사 연수 교육 및 행정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 학술지, 수목 진료 매뉴얼 등 수목진료 관련 서적 발행
- 약품, 기기, 기자재 등 수목진료 실무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수목진료 대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회원의 기술 자문, 안전교육,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업 등

□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수 입	135	396	713	374
지 출	71	339	674	296

※ 국비 지원 없음